

# 예탁증권 담보용자 약관

##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예탁증권 담보용자(이하 “담보용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주)BNK투자증권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담보용자 거래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 제2조(관계법규등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3조(담보용자의 종류)

담보용자는 고객이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을 담보로 담보용자를 받는 예탁증권담보용자(이하 “일반담보용자”라 한다)와 예탁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해당 주문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용자를 받는 예탁증권담보용자(이하 “매도담보용자”라 한다)가 있다.

## 제4조(담보용자약정 및 해지)

① 고객은 담보용자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대출신청서에 의하여 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담보용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보용자약정의 효력은 고객이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담보용자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고객은 별도의 담보용자약정 재체결 없이도 담보용자의 상환 후에 계속하여 담보용자약정에 따른 담보용자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담보 예탁증권)

① 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예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시장상장주권
2. 상장채권. 단,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과 2개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특수채, 은행채, 금융기관채 및 회사채[ABS는 제외하며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는 포함한다]
3. 집합투자증권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MMF, 단, 신탁수익증권, 단위형 집합투자증권, 사모형 집합투자증권, 중도해지 또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폐쇄형 집합투자증권)한 경우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은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 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채권
6. 신탁수익증권, 단위형 집합투자증권, 사모형 집합투자증권, 중도해지 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증권
7.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8.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중인 증권
9.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 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10. 주식워런트증권
11. 증권시장상장주권 중 위탁증거금 100%징수종목
12. 회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업무 안내>약관 및 유의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용자설명서에서 정하는 용자대상제외 종목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담보로 받은 예탁증권의 사정 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 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 (ELS에 한함)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한다.

5. 기업어음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과생결합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 제6조(담보용자한도)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종목별 등급한도 내에서 담보용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담보용자금액은 1인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담보용자금액)

회사가 일반담보용자를 할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용자하며, 매도담보용자를 할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매도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용자한다.

#### 제8조(담보용자방법)

대출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녹취가능한 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용자 실행시 담보용자금은 해당 고객 증권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9조(담보용자기간)

일반담보용자의 담보용자기간은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매도담보용자의 담보용자기간은 용자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담보용자를 받은 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담보용자이자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담보용자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자율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보용자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용자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 제11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담보용자시 별지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예탁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② 담보용자금에 대한 담보는 예탁증권에 설정하는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매도담보용자에 있어서는 당해 매도 주문이 체결된 증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한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담보용자시 담보로 설정된 종목의 교체는 가능하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내용은 제12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 제11조의2(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증권을 회사가 고객의 담보용자거래를 위하여

담보유자금 및 담보유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증권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추가담보의 제공)

① 일반담보유자 고객은 시세변동으로 용자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지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 기간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동 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포함한 최종담보 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객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신용공여가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추가담보는 현금이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13조(담보유자의 상환/이자)

① 일반담보유자의 담보유자금 및 담보유자이자(이하 “담보유자 등” 이라 한다)는 상환 기일(담보유자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회사는 제15조에 의한 임의상환방법으로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유자의 담보유자원금 및 담보유자이자(이하 “담보유자 등” 이라 한다)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시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③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담보유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 제14조(담보유자의 연장)

①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 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 시 제1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그 상환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제12조제1항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거나 담보대출가능 증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담보유자의 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예탁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담보유자금등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이를 추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담보유자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2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 증명우편, 통화 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요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요구
4. 국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 유가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담보유자이자, 담보 유자원금의 순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고객은 제4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의 경우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채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익일 제15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관련비용, 연체이자, 담보용자이자, 담보용자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 ⑤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인 경우에도 동 상실사유가 회복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7조(금지사항)

회사는 담보용자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담보용자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상환 담보용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당해 담보용자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 제18조(용자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담보용자약정 대상 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기 담보용자약정 체결자 및 담보용자를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용자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신규 및 추가 담보용자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담보용자 총 한도 초과 등 기타 회사가 담보용자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용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담보용자를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담보용자 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추가비용)

- ①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권 실행 등 채권보전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② 담보용자약정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

###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4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된다.

###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담보유자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1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용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신용고객에 대해서는 담보유지비를 140%를 유지하고,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반대매매는 발생일 익영업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예탁증권 담보유자약관에 대한 일반적 약정**

제1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

(1)제6조(담보유자한도): 고객은 종목등급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등급	개인	법인
S	20억원	20억원
A	15억원	15억원
B	10억원	10억원
C	3억원	3억원

※종목별 등급은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은 S등급에 준하여 한도 20억원 부여

(2)제7조(담보유자금액): 일반담보유자의 경우 담보가액 X <sup>주1)</sup>대출가능비율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매도담보유자의 경우 매도금액의 [ 98 %]내에서 대출을 한다.

주1)대출가능비율

담보종목	유형구분	대출가능비율
주식	S,A	65%
	B,C	55%
채권	대출가능종목	50%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MMF,	70%
	주식형(혼합형포함)	50%

※주식은 종목등급별로 대출가능비율이 다름.

(3)제9조(담보유자기간):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로 한다.

(4)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고객은 종목등급별 차등된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등급	이자율	비고
S	연 7.5%	○ 연장 시 : 연 8.5% ○ 연체 이자율 : 연 9.5%
A		
B	연 8.0%	
C	연 8.5%	

※대출이자 납부일은 매월[첫 영업일]로 한다.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증권은 S/A 등급에 준하여 이자율(연 7.5%) 부과.

※윤년(366일)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3%(최대 연9.5%)’ , 해당 연체이자율은 만기 이내

종목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연체이자 산정 시 약정이자율에는 신용공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포함하지 않음

(5)제11조(담보의 징구): 담보비율은 [(            100%            )]로 한다.

종목별대출가능비율

(6)제12조(추가담보의징구):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제공기간
계좌별	140 ~ 130%	추가담보제공요구일 포함 2영업일
	130% 미만	추가담보제공요구일 익일

(7)제 15조 제3항의 “<별지>” 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8)제 15조 제4항의 “<별지>” 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반대매매 방법 : 전액상환방식

2. 전일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반대매매 수량 산정  
 \* 산식 : [전일종가 x (보유수량-X )] / [신용공여잔고-(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x X)] =140%

3. 예시

A. 신용단가 < 매도단가(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예) 현금 500 만원, 신용 5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대출  
 >> 주가가 6,500 원으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요구하였으나 미납시  
 (종가 6,500 원에서 15% 하락한 5,525 원으로 수량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상환금액	예수금
전액상환	404	2,232,100	2,232,100	-

\*매매수수료, 신용이자 등 고려하지 않음

B. 신용단가 > 매도단가(전일종가\*15%할인된가격)

(예) 대용증권 500 만원, 신용 1,0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대출  
 >> 주가가 8,000 원으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를 요구하였으나 미납시  
 (종가 8,000 원에서 15% 하락한 6,800 으로 수량산정)

구분	반대매매수량	처분금액	상환금액	예수금
전액상환	657	4,467,600	4,467,600	-

\*매매수수료, 신용이자 등 고려하지 않음

(9)제 15조 제6항의 “<별지>” 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임의상환 반대매매일 오전 8시 40분까지

(10)제18조(용자의 제한 및 중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계좌)은 담보대출 약정을 제한한다.

1. 담보부족계좌
2. 위탁증거금면제계좌
3.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
4. 당사 특수관계인
5. 휴대폰 미등록자, 자택 또는 직장 연락처 미등록자
6. 반송등록계좌

(11) 제20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연체이자율(연 9.5%)을 따른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